

제3회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○ 회의일시 : 2025년 9월 19일 (금) 11:00 ~ 12:00

○ 회의장소 :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

○ 회의결과

심의안건 : 돌봄 필요시간 확인에 따른 운영시간 조정 안

심의결과 : 원안 가결

심의내용 :

- 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였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습니다. 위 내용을 토대로 필수 운영시간을 학기 중 : 14:00 ~ 19:00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.
- 돌봄 필요시간 확인서를 센터에 보관하고 지자체에 사본 제출하여 보고하되,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돌봄 등 수요 발생 시 해당일은 20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.

심의안건 : 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변경 안

심의결과 : 원안 가결

심의내용 :

제33조(병가)

①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병가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

2. 감염병으로 인해 해당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

3. 통원치료는 입원 또는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

③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고, 병가의 기간은 시설장이 해당 종사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한다.

④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
⑤ 유급병가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. <개정 2025. 09. 19>

제34조(장기근속휴가)

①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본 센터에서 만 5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에게 장기근속휴가를 시행한다.

② 근속기간에 따라 5~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시간 도래 후 다음 일부터 다음 장기근속 휴가 발생일 이전까지 휴가가 실시되어야 한다.

③ 휴가 예정일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시행하며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을 금지한다. <신설 2025. 09. 19>

2025. 09. 19

김해사랑지역아동센터장

